

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일부 개정

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11년 3월 11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(kr과 한국)에 따르는 도메인 이름 관리업무에 적용한다.

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②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.

제5조 제1항, 제1항 3호, 제2항, 제2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(등록 기준) ①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3.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.

②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3.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.

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메인이름은 한글[완성된 한글 글자마다 11,172자], 영문[A-Z][a-z], 숫자 [0-9], 하이픈[-]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다만,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2.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이상 17자 이하로 한다.
3.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.

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(등록)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,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,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(수수료 감면)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 촉진과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23조 제1항 10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10.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

부칙 (개정 2011.0.00.)

제1조(시행일)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<이하 현행과 같음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이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(kr)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에 적용한다.	제3조(적용 범위) _____ _____ (kr과 한국) _____ _____
제4조(등록 조건) ① (생략) ②신청인은 3단계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도메인 등록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.	제4조(등록 조건) ① (현행과 같음) ②_____ kr도메인이름 _____ _____ kr도메인 _____ _____
제5조(등록 기준) ①3단계 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3.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한다. ②2단계 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3.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한다. <신 설>	제5조(등록 기준) ①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_____ _____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. ②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_____ _____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. ③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,172자, 영문[A-Z][a-z], 숫자[0-9], 하이픈[-]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다만,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2.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이상 17자 이하로 한다.

	3.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.
제9조(등록) ①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.	① _____ _____ _____ _____거나,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, 도메인 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.
제14조(수수료 감면)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kr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	제14조(수수료 감면) _____ _____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_____ _____
제23조(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) ① (생략) 1. ~ 9. (생략) 10.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의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	제23조(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_____ _____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_____
<신 설>	부 칙 (개정 2011.0.00) 제1조(시행일)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[별표 1] 3단계 도메인 등록 자격 (생략)	[별표 1] _____kr도메인 _____ (현행과 같음)